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탐색』

- 선거연수원과 대학의 협업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II.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1.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4
2. 참여형 민주시민교육과 그 의미	15
III.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사례	25
1. 동국대학교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사례	26
2.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사례의 기여와 한계	64
IV.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모색	68
1. 게이미피케이션	68
2. 정치관계법의 이해	71
3. 현대한국정치실습	74
4. 비대면 시대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조건	77
V. 결론	78
< 참고 문헌 >	83

표 목 차

<표 1>기관별 민주시민교육 현황	9
<표 2>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시민단체 현황	10
<표 3>정치관계법의 이해 강좌 보고서	31
<표 4>캡스톤디자인 강좌 보고서	36
<표 5>타운홀미팅 리빙랩 프로그램 결과물	44
<표 6>폴리티쿠스랩 RCC 프로그램 결과물	60

그림 목 차

<그림 1> 게이미피케이션 프로그램 사진	27
<그림 2> 게이미피케이션 프로그램 기획안	29
<그림 3> 타운홀미팅 리빙랩 프로그램 사진	43
<그림 4>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68
<그림 5> 정치관계법의 이해 수업구성과 목표	71
<그림 6> 팀 프로젝트 공동관리 진행 흐름	72
<그림 7> 현대한국정치실습/학점인정과정의 구성	74
<그림 8> 현대한국정치실습의 목적과 운영방식	75
<그림 9> 비대면 시대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운영방식	77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민주주의 체제 스스로로부터 비롯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는 타인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인격모독과 같은 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형태의 발언과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듯이 나의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타인과 사회의 존중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존중받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는 제약될 수 있다.

그러나 젠더 갈등으로 이성을 혐오한다던지, 아니면 단지 소비자와 서비스업 종사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한다던지, 아니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이 좌절되었다고 하여 당선된 대표자를 이유 없이 음해하거나, 이른바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함으로써 왜곡된 사실을 배포하려고 한다던지 등의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갈등은 정치의 영역이자 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한 전제이지만, 갈등이 격해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정치의 영역은 실종되고 서로를 적대하며 제거하려고 하는 전쟁으로 발전 된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와 표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과제는 이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이다. 높은 시민의식을 갖춘 시민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매우 주목받는 분야다. 당파적, 이념적 대립의 시기를 지나 민주화 이후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의 민주시민교육 형식인 지식공유 방식의 이론강의, 단편적 이슈 토의 등이 아닌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 수요자가 교육 능동적으로 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방식은 교육의 원래 목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수많은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입식 교육 방식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넣다 보니 이론을 가르치는 강의 형식이 주가 되고, 이론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내용과 주제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 및 중앙, 지방정부기관 등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근거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의 대부분은 경제, 법, 정치, 환경 등의 이론적 전달 및 지식공유의 형태이거나 그 당시 정치분야에서 이슈되는 사건을 단편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공유나 뉴스에 나오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방법이다.

그나마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정치교육, 국민윤리교육 등으로 불리며 체계적인 내용과 과정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분류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국민정신교육, 사회정화교육, 반공안보교육 등으로 국가나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부터 ‘민주시민교육’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노력했지만 당파적 논쟁과 입시교육의 중요성에 밀려있는 상태다.

대학교육 또한 취업을 하기 위한 관문으로 여기지면서 대학들마저도 자본

의 논리에 따라 돈이 되지 않는 정치 및 민주시민교육 강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정치 관련 강좌를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형식적 민주시민교육마저 요원한 상황이다.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의 주체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보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은 민주시민교육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참여형 교육의 목표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과 지식에 대해서 안내하지만, 현실 정치 참여 경험을 더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것이다. 교육 수요자는 현실 정치 참여 경험을 통해 이론으로 습득한 민주주의와 정치 지식을 능동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다.

II장에서는 현재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동국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IV장에서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다시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말하기에 앞서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 해야하고, 또 민주시민교육을 말하기에 앞서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기에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상당히 난해하고 깊은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이 어렵고 난해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야지만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Aristoteles 2009).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이 유명한 명제는 현재 부정하기 어려운 진실이 되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다. 정치는 바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과제다. 집단을 이루어 사는 인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집단 내부에서 갈등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집단들은 그 갈등 속에서도 집단이 나아가야 하는 바를 결정해야 했으니, 그렇게 집단의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는 그 집단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본질을 지켜오면서 그 형태를 변화시켜왔다. 가령 아주 예전에는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제사장이라든지, 교황과 같은 종교지도자가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동서양의 중세에는 왕과 귀족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이른바 명예혁명, 독립혁명, 시민혁명을 계기로 인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민본주의 사상을 싹틔우며 현재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정치적 의사결정이 특정한 권력층이 아니라 실제로 집단에서 함께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간적인 한계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Weber 2013). 실제 정치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구현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의제를 중요하게 다루는지, 그리고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경쟁하는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주권을 구현 한다(Sartori 1995). 따라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민주주의를 선출과 책임이라는 대의제와 동의어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파악은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된다.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가져야 하는지” 혹은 “왜 민주주의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개념이 절차적 과정 뒤에 숨어 있는 셈이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유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과거의 비민주적인 정치체제 속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만 했던 시민들의 반성 속에서 등장한 것이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다.¹⁾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은 좌절한다. 자신의 의견이 실제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대 민주주의 체제가 대부분 대의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에 기인한다. 자신의

1) 민주주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이 생각은 루소로부터 찾을 수 있다. 루소는 자기지배란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려 했다. 루소, 「사회계약론」 참조.

의견을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것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대신하다보니, 선출된 대표자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할 때는 이내 정치적인 불만을 가지게 된다.²⁾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도 있다. 존중받아야 하는 ‘나의 의견’은 항상 존중받아야 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함께 존재하게 된다. 결국 나의 의견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는다. 대의제 속에서 대표자에 대해 갖는 불만 역시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내가 투표하지 않았던 후보자가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대표자가 되거나, 내가 지지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대표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시민들은 이를 두고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한다.³⁾

시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그 주권은 개인이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있고, 그러다 보니 실상은 개인의 의도와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는 오히려 개인의 의도와 생각이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체제가 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당화 되는 이유는 집단 내에 소속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이며, 나의 의견이 그 전제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 역시 그 전제에 해당 된다. 따라서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민주주의 때문이며, 동시에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 때문이다.

최근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 체제 스스로가 낳은 씨앗으로부터 비롯되었다(Eco 2004; Rancière 2011).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제 타인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인격모독, 그리고 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형태의 발언과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혐오나 인종차별 역시 표현의 자유로써 용인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마저도 이를 쉽게 용인하지는 않을 듯 하

2) 대표성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냉소적인 답을 한 사람은 미헬스다. 미헬스는 민주주의는 결국 과두제로 귀착한다고 이야기한다. 미헬스, 「정당사회학」 참조.

3)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를 가진 주체들 간의 공존을 전제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못하다. 샹탈 무페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역설을 지적한다. 샹탈 무페, 「민주주의의 역설」, 참조.

다.4) 과거에는 인권을 신이 주신 양도할 수 없는 법률이라는 ‘자연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였지만, 실제로 우리가 권리를 갖고 주장하게 되는 것은 사실 ‘신’ 때문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의 존중으로부터 비롯된다. 결국 나의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타인과 사회의 존중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존중받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는 제약될 수 있다.5)

그러나 위와 같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무색하게 최근 비민주적 행태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젠더 갈등으로 이성을 혐오한다던지, 아니면 단지 소비자 와 서비스업 종사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한다던지, 아니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이 좌절되었다고 하여 당선된 대표자를 이유 없이 음해하거나, ‘이른바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함으로써 왜곡된 사실을 배포하려고 한다던지’가 모두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과 사회의 존중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임을 망각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사할 때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까? 이런 형태의 법적인 제재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고 비민주적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자유롭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 논리는 정당화를 거듭하며 재생산되고, 국민들은 이에 따라 분열되고 갈등한다. 갈등은 정치의 영역이자 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한 전제이지만 (Duverger 2006), 갈등이 격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정치의 영역은 실종되고 서로를 적대하며 제거하려고 하는 전쟁으로 발전 된다.6)

이 난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들에게 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없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려면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는 무제한으로 옹호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각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 전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누가 제한해야 하는가? 정부인가? 의회인가? 언론인가? 결국 여기에 대해서

4)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는 마이클 셸텔, 「민주주의의 불만」, 「정의의 한계」 참조.

5) 자연법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먼저 사용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개념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싹을 피운 사람은 존 로크다. 존 로크 「통치론」 참조

6)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혹은 집단과 정치적인 타협을 하지 못할 때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이 전쟁이라는 말이다. 칼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참조.

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라는 압박에 도출할 수 없다.⁷⁾ 결국 시민의식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으며,⁸⁾ 이 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다. 높은 시민의식을 갖춘 시민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핵심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2)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매우 주목받는 분야다. 당파적이고 이념적인 대립 속에서 그리고 민주화 이후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은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방법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주입식 교육의 패러다임에 민주시민교육이 갇힌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교육 수요자에게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민주시민교육은 필연적으로 어떤 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이념적, 그리고 당파적 논쟁을 낳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시하여 다양한 국가기관 및 중앙정부기관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 2항

7) 랑시에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민주주의는 통치되어야 할 사회도 아니며, 한 나라의 통치체제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통치 불가능 그 자체이며, 이런 통치 불가능에서 모든 통치 행위가 기초를 찾아야 하는 그런 것이다” 자크 랑시에르,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참조.

8) 몽테스키외는 정치체제를 전제정, 군주정, 공화정으로 구분하고 각 정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제시한다. 그리고 몽테스키외는 이 중에서 공화정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시민의식을 제시한다. 몽테스키외, 『법의정신』 참조.

9) 잘 알려져 있듯이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기의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한다. 플라톤 『국가·정치』 『법률』 참조.

에 근거를 두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와 선거에 대한 내용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통일관련 가치관과 태도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이해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기획재정부는 경제, 환경부는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언뜻 본다면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 오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에는 관련 부처들이 관련 지식에 대한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명칭하여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기관별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야별	해당 부처	시행 기관	교육 전담자	대상	주요 (교육)내용	관련법률	
정치	선거	중앙 선관위	선거연수원	(민주시민 전문강사)	국민	정치, 선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통일	통일부	지역통일교육 센터	통일교육 전문강사	국민	통일관련 가치관과 태도	통일교육 지원법
	법	법무부	법문화진흥 센터		국민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등	법교육지원법
경제	경제	기획 재정부	지역경제교육 센터	전문인력	국민	경제	경제교육 지원법
	환경	환경부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국민	환경	환경교육 진흥법
사회	교육	교육부	각급학교	교원	국민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자질 등	교육기본법
	교육	교육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평생 학습관, 평생 학습센터	평생교육사	국민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	평생교육법
	인성	교육부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	전문인력	국민	인성	인성교육 진흥법
	청소년	여성 가족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건전한 민주시민	청소년기본법
	시민 단체	행정 자치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소요 사업비 지원	비영리단체 지원법

문화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국민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	---------	---------------------------	---------	----	------	-----------

“출처: 2017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이 불편한 진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공간, 즉 ‘지역’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제를 통해 살아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립되지 않은 민주시민교육의 여러 형태를 그대로 흡수하여 정치, 법, 경제, 환경과 같은 분야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마치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이 다뤄야 하는 것은 관련 분야의 지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방법이다. 이것은 법이나 경제, 환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쓸모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인,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의견과 방침을 이해하며 나의 의견과 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나갈 수 있는가’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덕목 위에 다른 분야의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법이나 경제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민주시민이라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은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표 2>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시민단체 현황

분야	시민단체명	주요 사업
정치	○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아카데미, 시민강좌
	○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인터넷방송
	○ 흥사단	흥사단아카데미, 평생교육센터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아카데미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민주정치아카데미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학교
	○ 함께하는 시민운동	함께하는 시민학교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시민교육강좌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차세대정치인육성 프로그램
	○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아카데미
경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
	○ 자유경제원	대학시장강좌, 시민강좌, 인터넷방송
사회	○ YMCA	시민정치운동
	○ YWCA	Y 아카데미
	○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 녹색연합	녹색아카데미
	○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체 시민교육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찾아가는 학교
문화	○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문화시민 순회교육

“출처: 2017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에서도 진행된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자율적이면서도 개인과 가족을 공적 영역과 연결시켜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공간임에는 분명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슈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다소 당파적이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비당파적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학교는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곳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권위주의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국민윤리교육, 국민정신교육, 사회정화교육, 반공안보교육 등으로 불리우며 이념적인 가치를 강요받아왔다. 그나마 1995년 이후 문민정부 이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자리를 공고히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심성보 2017).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전한 논쟁과 입시위주의 교육과 경쟁사회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정영철 2014). 대학 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다. 대학교육이 취업을 하기 위한 관문으로 여기지면서 대학 교육은 단지 학벌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현실이며, 동시에 대학들마저도 자본의 논리에 따라 돈이 되지 않는 교육은 점점 기피하고 있다. 그나마 정치 관련 강좌라도 개설되어 있다면, 최소한 지식의 수준에서나마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정치 관련 강좌를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형식적 민주시민교육마저 요원한 상황이다.

3)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한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첫째는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이다. 사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한 문제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목표는 공동체 속의 개인으로서 나의 권리와 공공을 위한 의무를 조화롭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당파적인 입장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당파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교육내용과 교육주체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다루며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인문 사회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추가적인 문제를 낳는다. 먼저 교육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별 분야의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교육 방식은 기존의 지식 교육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수자의 의도가 교육의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존의 교육과 차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해지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불리우는 집단과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한다. 먼저 진보세력은 민주시민교육에 매우 우호적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부분 진보진영과 가깝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수세력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집단이 교육을 통해 이념적인 친위부대를 육성하는 것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오해한다.¹⁰⁾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파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부터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행정부 산하에 있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정당 소속이며 어떤 이념을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하에 있는 교육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항상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시민교육은 앞으로 유권자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당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주무기관이 없다. 그러다보니 모두가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형국으로 비추어 진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루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파편화되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이는 첫 번째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전담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보수 입장을 옹호하는 쪽에서 진보진영과 그와 친화적인 시민사회단체가 다채롭게 자기 진영의 이념을 각인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민주시민교육의 주체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 의문은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통해 다채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10) 보수 이념을 대표하는 단체로 알려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2018년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의 신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내용의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인성교육이 민주시민교육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이 진보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2018).

지, 획일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은 민주시민교육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국가 및 정부기관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주무부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있다. 관련기관이 예산을 통해 통제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원론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원론적 합의를 유지하며 발전시킬 주무기관 역시 필수적이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국가 및 정부기관이 단지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내세우는 근거, 즉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라든지,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민주시민교육을 이끌어 가서는 안된다’ 라든지의 주장 역시 사실은 획일적인 주장이다.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위에서야 다른 과업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론적인 대전제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최소한의 토양은 있어야 한다.

물론 정부나 국가기관 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친화적인 친위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자행되었던 과거의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다. 이것이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민주시민교육에 관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자면,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면서 실효성이 있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와 주무기관의 존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전문성 있는 교육 인력 구축도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은 언뜻 보면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탁월함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과 논리도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합리주의적 형이상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낡은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도 어렵다. 또한 민주공화국의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은 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자유, 그리고 집단과 공동체,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의 조화로우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시민의식이 아닌 개인주의나 전체주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강사진이 해당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교육자가 해당 역량을 갖추나갈 수 있도록 복돋아 줘야 한다. 이를 구현하지 못하고 강사가 방향을 잃고 헤매인다면,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답습하기만 하는 형태의 교육을 벗어날 수 없다.¹¹⁾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 체계적이지 못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주도할 전문적인 강사진의 부족은 복합적으로 실효성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오해 속에서 오늘도 정치를 혐오하거나 경원시하며 이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다. 현실 사회문제의 해결은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관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시민들은 최소한의 정치인 선거를 치르고 방관자가 되어 이를 지켜본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정치는 다시 혐오된다. 이 악순환의 과정 속에서 대표성은 약화되고 정치적 기반은 약해진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실효성이 없는 비체계적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2. 참여형 민주시민교육과 그 의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다른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란 교육 수요자가 수동적으로 교육에 임하지 않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11) 이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지 못하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바르게 구현되지 못했을 때 이를 극복해왔던 과거만을 알려주는 것이 된다.

1)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익숙한 교육형태다. 매우 단순한 풀이로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이해해도 무방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왜 참여일까?

정치의 특성은 바로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살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및 그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정치는 현실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의 바람직한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현실에 존재한다기보다 만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이상적인 그 무엇이다.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양면성을 가진 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사상이나 국제정치나 정치과정 등의 정치학의 내부 분과로 들어가더라도 이 양면성을 가지는 생각은 그대로 남아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각의 틀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익히 이야기한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다. 그렇다면 국민들 역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대안을 모색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대다수가 이론 중심의 교육이다. 시민들에게 언어화되고 개념화된 이론들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언급하자면 정치의 현실에 기반 한다.

사고실험을 통해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있다. 이 시민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과 학습 위주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이수했다고 가정하자. 이 시민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만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 이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글로써 제시하였다고 했을 때, 시민들은 주어진 내용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한 하다. 시민들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 대안이 실효성이 있을까? 실효성이 있기 힘들 것이다. 국민들이 비판해 마지않는 탁상행정

실 바로 이 메커니즘으로 벌어진다. 답은 현장에 있지만, 우리는 현장을 표현한 글과 도식들을 현장이라고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린다. 그러나 그 해답은 이미 현장과는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무수히 반복해 온 실수를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에서도 거듭하려 한다.

사실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벌어진다. 첫 번째는 학문 내부에서 일어난다. 학문에는 여러 분과가 있다. 그 중에서도 철학은 원리의 원리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학문분과로 자리매김한다. 그런데 이 철학의 내부 분과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 형이상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로 원리의 원리를 자처하는 그야말로 왕도를 가진 학문이다.¹²⁾ 다시 말해서 어떤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면 형이상학을 해야 하고, 반대로 말하면 형이상학을 알고 있다면 개별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일어난다고 해도 그 원리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개별적인 사건이나 실제 현실을 경시하거나 무감각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형이상학은 일반화와 보편화라는 무기로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두 번째 괴리는 현실과 학문에서 일어난다. 학문은 보편성과 일반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건을 몇 가지 틀로 규정하려고 하는, 위에서 언급한 형이상학적 발상에 익숙하다. 따라서 정치학을 위시로 한 대부분의 학문들은 개별사건을 사건 하나로 보지 않고 이를 일반화시켜 어떤 원칙을 도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도출된 원칙이 이른바 이론이고, 이 이론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학문의 영역인 것처럼 인식되어 버렸다. 그러다보니 학문과 현실은 마치 넘을 수 없는 간극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정치학과 현실 정치는 전혀 다른 영역인 것처럼 다루어진다.

세 번째 괴리는 공간적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과 지방의 괴리다. 사실 지방이라는 단어는 중앙에 예속된, 중앙보다 뒤쳐진 지역을 뜻하는 단어로 언어적으로 이미 계층화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중앙과 지방이라는 틀을 놓고 문제를 다루게 되면 항상 지방은 예속되

12) 형이상학은 영어로 metaphysics다. 이것은 자연학 연구자이기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을 언급한 뒤에 형이상학을 논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 meta는 '무엇의 뒤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참조.

거나 부가적인 것, 혹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 진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산불이 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만약 중앙에서 불이 났을 때에 대한 일반적 지침으로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 소방차를 출동시켰다고 하더라도, 실제 불이 일어난 곳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이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된다.

이제 실제 현실 문제와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이 세 가지의 괴리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현실 문제는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이론이 아닌 실생활에서, 그리고 형이상학적 일반화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벌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 문제를 일반화시켜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책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교육한다. 그러다보니 어떤 현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같이 전달하게 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은 특수성을 갖는다.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은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며, 또 아니여야만 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지식은 실천을 낳지 못하여 정치적으로는 의미를 상실하고, 또 지식 전달은 교수자의 입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피할 수 없어 당파성에 대한 시시비비 是是非非를 낳는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 현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육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논의했듯이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이 지식 전달의 교육으로 남게 된다면 교수자의 이해관계가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후보는 아무것도 교육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이미 도덕교육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사실 도덕교육에서는 이미 민주시민교육이 현재 겪고 있는 과정을 한 차례 겪었다. 무엇이 도덕이며 어떤 것을 가르쳐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화를 통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기존의 도덕을 답습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도덕교육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가치명료화’ 교육이다. ‘가치명료화’ 교육은 개인마다 가치를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의미부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괄적으로 ‘무엇이 가치있는가’에 대해 교육하지 않고,

교육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찾아가도록 하는 교육 방식이다(Raths et al 1994).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치명료화’ 교육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갖는다. 먼저 ‘가치명료화’ 교육은 마치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존중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정작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명료화 교육은 이미 개성이 다른 개인들의 가치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 전제는 열린 전제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전제이며, 사실 가치명료화 교육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가치명료화’ 교육은 누구의 생각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닫힌 명제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셈이다. 또한 ‘가치명료화’ 교육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가치의 차이에 대한 강조에 대한 교육은 때로는 사회의 통합과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서로 다르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함께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는 방안, 즉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마저 없이 다양한 단체에서 진행하는 방안은 바로 이 ‘가치명료화’ 교육의 핵심 개념에 부합하는 생각이며, 따라서 문제점도 공유한다. 민주시민교육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면 비민주적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대전제임에도 이 대전제가 필요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으로서 단지 다른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함에도 단지 서로 다름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만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공유해야하는 지식과 이념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하고 교육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공유해야 하는 이념은 민주주의를 뜻한다. 사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기 이전에 이념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을 당위로 가르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비민주적이다. 오히려 이 민주주의의 이념이 언제

든지 도전 받을 수 있고, 그 도전들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정당화되어야만 바람직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사례 역사 등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국내외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는 불가피성이라든지, 정당, 의회, 선거를 단지 지식으로 안내할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의회, 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치과정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교육 수요자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여 현실 정치와 부합하지 않는 생각을 거둬내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한 민주주의를 정치과정으로 오해하여 정치공학적 사고나 기계론적 의미의 정치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숫자가 증가해야만, 바람직한 정치제도에 대한 진실된 고민들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정치권에서 정한 당파적 입장을 따라 읊조리는 수동적인 시민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나 경제, 환경이나 문화 예술에 대한 지식은 이와는 무관한 부가적 지식이며, 사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틀에 부합해 보이지는 않는다.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근거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정치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안내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지식과 이론의 틀이 아닌 현실참여에서 경험하자는 것이다. 교육자는 정치 참여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에 대한 지식들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당파적인 입장을 오히려 몸소 체험할 수 있다. 만약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시민에게 민주주의의와 정치과정의 기본적인 소양을 쌓게 하고, 실제 문제 해결이 필요한 환경 문제는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과 그에 대한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시민은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 문제에 참여하는 주권자가 될 것이다.

2)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듀이는 교육이 현실에 기반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듀이는 언어가 실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그 틀에 현실을 가두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경험하면서 가능하다는 점, 교육에서 하나의 이상향을 정해놓고 추종하게 되면 단지 교육자의 의지를 재생산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실용적 교육을 강조한다.

듀이는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주목했는데, 그건 교육의 본질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 듀이는 교육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이다. 그래서 듀이는 그 전까지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졌던 비민주적 형태, 다시 말해 지식이라는 권위를 빌어 철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태를 목격하고 이를 돌파하려고 한다. 따라서 듀이는 언어적 형이상학의 논변을 부정하고, 실제의 가르침은 현실에 있다는 이른바 실용주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지적권위를 가진 일부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이제 인간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발판삼아 듀이가 주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민주시민교육이었다. 우리가 서로 현실을 직시하며 스스로를 교육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개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고, 바로 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만 시민들이 성장함으로써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을 의사소통을 통해 공유하고 축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듀이의 교육 철학에 핵심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듀이는 어떤 내용을 민주시민교육에서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정치적 발전을 목표로 할 때 대표자를 선출하는 시민에 대해서 행해져야 하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듀이는 민주시민교육이 이에 부합하는 교육이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모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부당한 조건들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

다”고 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듀이의 주장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까지도 교육은 지식의 전달로 남아 있다.

듀이의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을 번역한 이홍우는 역자해설에서 듀이의 교육철학을 “이론은 실제에서 파생되며 실제에 적용되는 한에서 가치를 지닌다”라는 명제와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사회적 계층 분열을 반영하며 그것을 영속시킨다”라는 명제로 정리한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것은 이론보다 현실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론이 실제의 현실을 굴절시킬 때, 계급화된 사회계층이 영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역자는 이내 “오늘날의 교육은, 현상의 지적 이해를 위한 이론적 교과와 실용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실제적 교과를 분리시키고 전자를 후자의 우위에 둔다는 점에서 희랍 교육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교육은 듀이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인정한다(dewey 2007).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교육은 다시 이론 중심으로 돌아갔을까? 그것은 교육 수요자들을 스스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기보다 교육되어야 할 미성숙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원인이 있다.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아서 교육을 통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개념(Locke 2011; 2014)과 인간은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개념(Rousseau 2006) 사이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고난 부분만을 교육하고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잠재력 있는 역량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힘을 얻지 못했다. 또한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의 일반화에 대한 열망과 획일화는 교육을 이론 중심 교육으로 회귀시켰다. 바람직한 인재상을 고정하고 그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지식을 채워 넣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잠재력을 가진 교육 수요자들은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한 채 일렬로 세워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실제 교육과 평가, 그리고 그 반성의 역사가 길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역량이라면, 동시에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도덕교육의 변천과정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 해보고자 한다. 가치명료화 교육을 설명하면서 안내했듯이 도덕교육 역시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을 기존의 질서에 대한 동의와 복종으로 규정한다면, 도덕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아는 것’이 되고, 도덕교육은 도덕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이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된다. 반면 도덕을 선한 의도와 같은 동

기의 영역으로 바라보게 되면, 도덕은 도덕적 문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거나 이를 위해 ‘행위 하는 것’이 된다. 이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사실 오래된 논쟁거리다. 철학적으로는 ‘이성’과 ‘감정’의 문제, 사회학적으로는 ‘동기’와 ‘행태’의 문제와 연관이 있지만, 이 기나긴 논쟁 속에서도 결론이 한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않았다. 따라서 최근의 도덕 교육은 이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된 ‘역량’에 집중한다. ‘역량’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나 기량을 뜻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역량이란 도덕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또 이에 기반하여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킨다.¹³⁾

민주시민교육으로 이를 치환하면,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들을 아는 것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내재된 스스로 주권자라는 마음가짐이 혼합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고취시키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민주주의의 제도만 알고, 주권자라는 인식이 없으면 기존의 제도를 답습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고, 스스로 주권자라는 인식만 있고, 제도적·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자신의 주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비민주적 시민으로 귀착될 수 있다. 정치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스스로가 주권자라는 민주시민의식은 모두가 중요한 셈이다.

따라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핵심 교육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선거, 정당 등 정치과정에 대한 제반 지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과 공동체의 현실 문제를 접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고 이를 피력하는 자기표현과 참여의식이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에서는 굴절되지 않은 실제 문제를 확인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원주의 함양을 위한 상호 소통과 공감이다. 나와 타인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인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수긍할 수도 있어야만 한다.

13) 린드는 규칙에 대한 복종, 선한 마음, 역량이라는 세 가지 틀을 통해 도덕을 바라보았고, 이 중에서 도덕을 역량으로 바라본 대표적인 사람은 콜버그다. 심성보. 2014.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 참조.

이 글에서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주체로서 선거연수원과 대학에 주목한다. 선거연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정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면서 중앙과 지역의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해 보인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선거연수원과 대학의 협업 사례들을 살펴보고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 모델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Ⅲ.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사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형태는 한정적이다. 현재 대학 내 민주시민교육은 크게 강의형과 참여형, 정규과목과 일시적인 특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주로 이뤄지는 유형은 일시적 강의의 형태다.

특강, 간담회 등의 일시적 강의형 교육이 주로 진행되는 이유는 강의자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해본 익숙한 유형이며, 한 번에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방적 강의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강의자와 학생들 간의 상호교류보다는 경험 및 관련 내용 전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일시적 강의형 교육의 강의자는 정치인,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학과의 교수 등이 대부분이며,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한 학기 이상 진행되는 과목으로 편성된 강의형 정규과목의 경우 정치 관련 공공기관에서 파견되는 직원 또는 교수의 주도로 진행된다. 보통 일주일에 회당 1~3시간, 1~2회, 한 학기로 따지면 적게는 15시간에서 많게는 45시간 동안 진행되는 정규과목은 정치관계법, 선거와 투표, 정당, 국제정치 등 정치에 관련된 지식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충분한 시간 동안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강의는 대부분 주입식, 강의식 교육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가진다.

참여형 교육은 국회, 청와대,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 등 정치 관련 기관을 방문, 견학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이 직접 의정활동을 체험해보거나 정책을 분석하고, 선거 진행 방식을 경험해보는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교육을 개발해 도입, 진행하고 있다. 수강자들이 강의 중 이론으로 학습한 내용을 직접 접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은 정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일시적 참여형 교육은 강의형 정규과목 중 일부 시간에 진행되거나 관련 학과 또는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형 정규과목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선거연수원,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지방의회 등 정치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장에서는 동국대학교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방식의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식이나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을 개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1. 동국대학교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사례

1) 게이미피케이션(게임이론)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Game)’과 ‘~되기(~fication)’라는 단어 조합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IT 분야 컨설턴트였던 영국인 닉 펠링(Nick Pelling)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용자가 새 전자제품을 접하는 과정에서 빠르고 즐거운 사용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제안했다.

정치 분야의 게이미피케이션은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자신의 사이트에 이를 접목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캠프는 당시 인기였던 소셜 미디어 서비스 ‘Foursquare’를 통해 시민들에게 배지와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정책 홍보를 게임처럼 느끼게 했고, 시민들의 선거 참여와 자신의 지지도를 올리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은 학생들이 정치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놀면서 정치하기라는 형태를 통해 정치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능동적 참여형 교육이다.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플레이도 예측해야 하며 이를 반복해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은 두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게임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직접 게임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학생들이 직접 게임을 만드는 경우 학생들은 게임행위자이면서 동시에 게임창작자로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을

보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¹⁴⁾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강좌 중 게임이론을 통한 정치분석과 정치학의 연구방법 강좌에서는 게임이론을 통한 정치분석 방법과 게임이론 응용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학생들은 이론 강의를 통해 다양한 게임 방법들을 익히고 이를 응용해 현실 정치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 얻은 이론적 지식을 이용해 강좌가 끝난 이후에도 교내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 동국대학교 및 정치외교학전공에서는 뒤이어 나오는 캠프톤디자인, 리빙랩, RCC 등 학생주도형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연수원에서는 2018년부터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림 1> 게이미피케이션 프로그램 사진



14) 김민수 외. 2019.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교수법 연구”. 선거연수원



“출처: 선거관리연수원 홈페이지”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행사에서 진행되는 게이미피케이션-정치문제해결 보드게임은 학생들이 정치 문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드게임을 경험해봄으로써 게임의 구조를 파악하게 한다. 이후 전문가 강의와 팀별 멘토링을 통해 보드게임의 내용을 구체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보드게임 제작을 통해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넘어 제작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정치 이슈를 다방면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¹⁵⁾

15) 김민수 외. 2019.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교수법 연구”. 선거연수원

보드게임 기획안			
게임 이름	정치풍운		
게임 제작자	게임 소요시간	게임 장르	게임 가능인원
발문서 작성여부 유니버설 규칙성 유일성	20분 (승리조건) 환경된 시간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선거제도	3~6인
게임 목표	(패배조건) 이긴 사람 한명 생기면 다른 분 고배.		
게임 주제 및 주제에 대한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들이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쓸 수 있다.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게임 구성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게임 셋팅 (그림으로 표현)			

1. 지정된 지도에서 주사위를 던져 ~~숫자~~ 숫자를 지운 봉식으로 전진하며 다양한 도구. 카드는 사용하며 특별한 사건은 준비하기

2. 각종 정보기관의 지지를 얻어서, 지지율을 얻을 수 있고 당선 성공률을 높인다.

3. 환경된 시간에 가장 높은 지위를 기록한 사람이 이긴다.

4. 후보자 각각 선별 카드 환경 하고 있다. 제한 카드: ① 선별 배정 조사 (한 칸 이동) ② 언론 가짜 (제한된 점 기록 및 10번 움직인다) ③ 자선 카드 (제한된 점 기록) ④ 반포사 카드 (언론 카드 변경)

5. 주사위를 던져 때마다. 기회 카드와 제한 카드 같이 뽑는다. (기회카드 ~~을~~ 쓰는 본인 결정하고 단 제한 카드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 카드 그중만 기록 수 있다. 6. 특별한 곳: 반포, 공력 받지 않은 곳 같. 기회 카드 가능 없음 7. 빈칸.

게임 방법 및 세부 규칙

보드게임 기획안			
게임 이름	대선 토론 시뮬레이터		
게임 제작자	게임 소요시간	게임 장르	게임 가능인원
발문서, 바깥에 대시판	10 ~ 15분	카드	3
게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리조건) 찬성도 50 획득 유권자 카드 5개 획득 (패배조건) 유권자 만의 찬성도 50, 카드 5개 획득. 1점씩 유권자가 가운 들면 100% 100% 		
게임 주제 및 주제에 대한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게임 구성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게임 셋팅 (그림으로 표현)			

1) 찬성 지지 판 및 모든 카드의 지위를 개한다.

2) 유권자 카드는

25% 1장
50% 2장
75% 부대 3장

게임 방법 및 세부 규칙

보고, 해결방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법 조항의 문제점을 현행법과 상위법의 충돌, 법적 보완의 필요성, 현실적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 정리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반영해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도출해 팀별 발표시간을 갖는다. 발표 이후에는 다른 팀과의 질의응답 및 토의를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반복한다.

팀별 토의는 개정안을 발표한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다른 방식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 해당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법안 개정 혹은 신설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도출, 법안 작성, 토론의 순서로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나 국회의 입법 방식과 유사하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법제화 과정과 정치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 입법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이는 다른 강좌에서 학습한 이론을 현실 정치 문제 해결에 결부시키거나 응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전공 능력 향상 및 현실 정치 경험에 의미가 있으며 동국대학교 및 정치외교학전공에서 운영하는 캡스톤디자인, 리빙랩, RCC 등 학생주도형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발전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표 3> 정치관계법의 이해 강좌 보고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의 자유화의 필요성과 대안 -선거운동의 재정의를 통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개정방향과 선거비용 조항신설 방향-
1조
서론 선거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 두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이러한 두 개념은 간혹 상충되므로 국민의 정치적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여 두 개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선거법은 자유보다 공정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지만, 선거가 거듭되면서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이해도와 정치적 역량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제254조의 맹점과 제58조의 선거운동을 재정의 하고,

해외 사례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화 방향과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론 I: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의 맹점과 제58조 선거운동의 재정의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2. 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 1. 25.>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대선의 경우 22일, 그 밖의 선거는 13일) 이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행위를 제한하는 법으로, 과열경쟁을 완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언급되는 제254조에는 정당성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과열경쟁의 제한, 공정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성의원들과 거대정당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경쟁력에 뒤처지는 신인 정치인들과 군소정당에만 불리한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유권자들과 신뢰를 쌓을 기회가 현저히 적은 신인 정치인들에 비해 언론의 노출 등으로 합법적 홍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결국 제도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그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을 제한해, 검증에 있어서 제약이 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음에도, 공정성이라는 명목 하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오히려 과열경쟁을 키우는 문제가 존재한다.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12. 2. 29., 2013. 8. 13., 2020. 3. 25.>

본 조는 이렇듯 선거운동에 규제를 가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선거운동'의 정의에 있다고 보고,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제58조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의미는 '당락'에만 초점을 맞춰 지극히 협소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한정된 정의 하에 규정들이 파생되다보니 제254조를 비롯한 까다로운 조항들이 생겨, 오히려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운동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유권자와 신뢰를 쌓는 모든 행위'로 이해한다면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할 필요가 없어진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계가 윤리적인 신뢰관계의 구축으로 이어지고, 후보자는 유권자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다.¹⁾ 이렇게 재정의한 선거운동의 의미로부터 제254조의 개정방향을 제안해 볼 것이다.

본론II: 해외 사례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화 방향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의②와 달리, 미국과 영국은 선거운동을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보고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영국은 의회 해산으로부터 수상의 선거일 발표 익일부터 약 3~4주의 기간을 선거운동기간으로 하는데, 관례적이지 공식적인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없다. 즉 선거일 발표 전에 행해지는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합당하게 여긴다. 또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254조와 달리 "①의뢰인 또는 선거사무장의 성명과 주소, ②인쇄인의 성명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토록 한 것(「국민대표법 2000」²⁾, 투표안내문(poll card)과 유사한 형태의 선거홍보물을 금지(「국민대표법 1983」 제 94조)하는 것을 제외하면 인쇄물에 대한 제한이 약하고,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그러나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사전선거운동이 활발하지는 않다. 미국 역시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영국보다 폭넓은 선거운동을 보장하는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방법들조차 허용한다.³⁾ 그러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선거 운동 비용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강하다.⁴⁾ 즉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이 아닌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규제를 채택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모두 담보하는 실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반대 논거인 '선거운동 과열'을 오히려 완화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과 같이, 선거운동의 과열의 원인은 선거운동의 방법만이 아닌 선거비용의 상승도 있다. 두 국가가 선거비용 규제에 집중하는 것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또한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고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인데,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현재의 2012년 위헌 판시에서도 알 수 있듯, 선거운동의 제한이 줄어들수록 비용이 낮아져 선거운동의 과열로 인한 고비용 선거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254조를 완화하여 생길 수 있는 우려는 선거운동 비용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히며,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다음 개정안을 제안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개정안 제안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보통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선거운동기간이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론III: 사전선거운동의 자유화에 따른 악용 문제점과 방안

제 254조 2항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의도왜곡 및 정치 혐오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3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 시민들의 객관성 왜곡 가능성, 두 번째, 정치판의 과열된 분파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비용의 문제점 등이 있다.

먼저 사전선거기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와의 관계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치 및 선거의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그 의미 전달이 왜곡되거나 사적인 감정이 잘못 발현될 경우, 시민들의 객관적인 관점을 흐릴 수 있다. 또한, 후보자의 정책 및 정치적인 견해보다 외의 것에 이목이 쏠릴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각 정당들의 인식개선 및 지지층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인해 분파 현상이 과열될 수 있는데,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 혹은 정치 혐오를 낳을 수 있고 소수정당의 위축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선거기간의 장기화는 선거비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치자금의 부족한 신예 정치인, 혹은 무소속 후보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로 작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성 확대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자유성의 확대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사태에 대한 대안 및 해결방안을 필수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더불어 가정 혹은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성을 억압 및 위축시키는 것은 민주적인 선거에 어긋난다. 따라서 제 254조 2항에 대한 규제 완화는 헌 공직선거법에서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비용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투명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실명제’ 신설 제안

①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 규제받는 선거비용의 경우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도록 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보고에서도 수입, 지출의 내역 뿐 아니라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 인적사항 또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비용규제의 철저화

음성적으로 조달, 지출하는 선거자금이 문제가 되므로 이러한 음성적, 불법적 자금의 조달을 방지하고 양성화된 투명한 선거자금을 이용하여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법정선거기간의 선거비용 뿐 아니라 일상적 정치자금에 대해 공개제, 실명제 등의 규제를 명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아, 제7회 강원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은 6.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5)이에 따라 본 조는 위와 같이 ‘실질적 정치자금 실명제’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선거공영제의 확대

공직 선거법상 선거공영제는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선거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후보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제57조 제1항6)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2조의2).” 즉, 많은 선거비용을 요구하는 항목은 후보자가 먼저 지출해야하며, 선거의 결과로써 일정 수 득표를 한 후보자에 국한하여 선거 후 해당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여 사실상 선거공영제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이와 같은 현행 선거공영제는 후보자가 일정수의 표를 얻어야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때문에 대정당의 후보와 기성정치인에게 유리, 신인 후보자는 불리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물론 선거비용의 보전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 여겨질 수 있는 반면, 기득권의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조건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후보 난립방지는 후보자 기탁금제도로 해결해야 하며, 국고에 의한 선거비용의 보전은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대의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와 함께 자유로운 선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서 정치적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유권자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바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는 것이다. 철저한 선거비용규제와 선거공영제를 통해 사전선거운동 자유화의 한계를 보완하고, 진정한 자유와 공정성을 실현한 선거를 기대해본다.

- 1) 민여울, 『선거에 있어서 기간 제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국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2010, p.399에서 재인용.
- 3) 미국연방선거운동법 제22조(공공 커뮤니케이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방송, 케이블 또는 위성 커뮤니케이션, 신문, 잡지, 옥외 광고 시설, 단체 우편, 또는 전화 홍보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유형의 일반 공공 정치 광고”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단체우편’(같은 법 제23조)과 ‘전화홍보’(같은 법 제24조)는 비슷한 내용의 우편 혹은 팩스, 전화를 500통 이상 이용하는 선거운동 방식이다.
- 4) 미연방선거운동법(FECA:Federal Election Campaign Laws)은 자금의 모집·집행을 담당하는 정치위원회(political pommittee)가 월별, 분기별, 반기, 년도 말, 선거 전·후, 24시간, 48시간 단위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5) 이용철, 「지방선거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 저조」, 『MBC 강원영동』, 2018.10.28, <https://www.mbceg.co.kr/post/61144>
- 6)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운동비용은 선전벽보의 첨부 및 철허비용, 선거공보의 발송비용 및 우편요금, 소형인쇄물 발송비용 및 우편요금,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및 투·개표 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위의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과 신문광고 및 방송연설비용 등은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는 경우

“출처: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

3) 캡스톤디자인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프로그램은 ‘창의적 종합설계’가 가능한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캡스톤(Capstone)은 돌기둥이나 담 위 등 건축물의 정점에 놓인 장식, 최고의 업적·성취를 뜻하는 단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사회진출 이후 부딪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⁶⁾

전공강좌를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설계, 진행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사회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과제의 주제를 직접 제안하고,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을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공대나 이대 등 실험이 필요한 과목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점차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다.¹⁷⁾

학생들은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원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현실 정치 문제를 선택한 후 법적, 정치적, 사회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반적인 과제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정치 문제 해결 과정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앞서 살펴본 게이미피케이션 및 정치관계법의 이해 강좌 등에서 배운 이론과 과제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이 직접 폐기물 관리, 재외동포, 탈북민, 군 관련 제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국회 위원회 등이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치, 사회문제를 선정해 집중 분석한다. 문제점 분석은 법안 분석 및 개정안 마련, 게임이론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교수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멘토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에서는 학기별로 4~5개의 캡스톤디자인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1학기에 개설되는 강좌로는 한국정치론, 현대한국정치 실습, 의회정치와 한국국회, 정치과정의 이해, 글로벌거버넌스와 국제기구가 있으며, 2학기에는 선거제도의 이해, 비교정치, 정치관계법의 이해, 미국정치론 강좌가 개설된다.

<표 4> 캡스톤디자인 강좌 보고서

일반 Capstone Design 최종보고서

프로젝트 국회 환도위 소관 순환사회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안
16) 환경경제용어사전

17) 동국대학교 링크사업단 홈페이지

명					
KeyWords	폐기물	정의	자원		
설계개요	<p>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폐기물'은 곧 '자원'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도 「환경정책 기본법」, 「녹색성장기본법」 등에서 자원순환의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즉 폐기물 관련 정책이 '처분' 중심의 과거 제도에서 '순환이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 국내의 폐기물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한국의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살펴보고, 순환사회라는 추세에 맞춰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지 분석했다.</p>				
과제내용 요약	<p>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폐기물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관련 용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분류 체계로 인해 폐기물의 유해성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폐기물의 분류 체계도 다른 자원순환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비효율적인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p> <p>「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항)</p> <p>폐기물의 개념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등 폐기물을 배출원 발생량 기준으로 보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의를 본다면 지정폐기물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개념들이 많아 유해물질 기준의 분류체계로도 볼 수 있다. 즉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개념과 분류체계가 매우 추상적이고, 분류체계가 혼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p> <p>한국의 「폐기물관리법」에서 나타나는 폐기물의 입법적 정의는 폐기물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이 어떤 것인가 예시를 들고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는 모호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 폐기물의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해석상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관계법상의 폐기물, 재활용 가능 자원, 부산물, 중간 가공 폐기물 등 관련 용어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물질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보아야 할지, 폐기물로 보아야 할지, 부산물로 보아야 할지 등 해석상의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p> <p>현행 법제대로 적용하면 가령 동물의 경우, 사업장, 즉 축산업종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로서 규정되겠지만 일반 가정집의 애완동물은 발생원이 가정이기 때문</p>				

에 생활폐기물로서 규정되어 애완동물을 일반 소각용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발생원 중심의 규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많다.

따라서 현행의 정의처럼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법제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 관련 용어 간의 관계도 정립하여 순환자원에 관한 논의를 법에 추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 가능자원, 재생자원, 부산물(지정 부산물), 중간 가공 폐기물 등 상호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완전히 폐기물로서 '처분'되는 폐기물과 재활용 되어지는 물질 간의 용어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경우, '순환자원'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질을 '폐기물'로 구분하는 방법과 순환자원을 폐기물, 재활용 가능 자원, 부산물, 중간 가공 폐

기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려하는 안을 대안으로서 제시한다.

폐기물을 분류하는 체계로 우리나라의 주요 방법은 배출원 발생량 기준, 즉 발생원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경우도 소규모의 경우는 생활 폐기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사업장이 부담하고, 생활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 소규모 사업장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는 필요할 수 있지만, 정부가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생활 폐기물로서 분류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유해성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생활 폐기물로서 처리하면 유해성을 가진 폐기물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자원순환선진국으로 추앙받는 EU, 독일, 미국의 경우 모두 유해성에 따른 분류를 우선시 하고 있고, 이웃국가인 일본의 경우 발생원에 따라 1차 분류를 하지만, 1차 분류에 유해성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특별 관리 폐기물로서 별도로 관리한다. 유해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EU, 독일, 미국처럼 유해 특성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고, 이를 업종, 공정과정, 유해 특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유해 폐기물을 명확하게 제시해, 순환사회를 위하여 동시에 유해성 있는 폐기물을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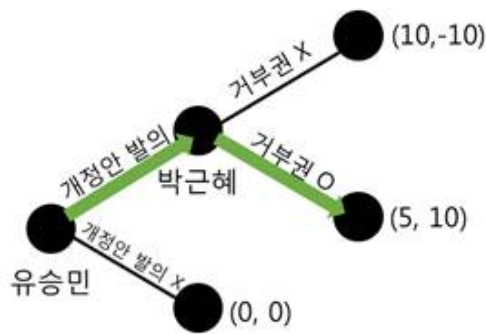
따라서 폐기물의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도입하고, 발생원이 아닌 유해성을 기준으로 유해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법은 재활용이 가능하더라도 1차 분류 기준에 따라 재활용 하지 못하고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폐기물이 발생했을 경우 순환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재활용, 부산물 판단 기준, 유해성 기준 등을 도입하여 자원순환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폐기물관리법의 방향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 명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게임
-------------------	---

KeyWords	게임이론	국회법 개정안	내쉬균형	서브게임 내쉬균형	혼합전략
설계개요	<p>국회법 98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즉, 기존 국회법의 내용은 국회가 대통령, 총리의 명령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잘못됐다고 통보할 수 있다는 구조이다. 기존 국회법이 통보 기능만 하는 것이었다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이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 행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p> <p>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친박계와 비박계의 입장은 유승민 사퇴를 두고 대립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보자면 친박계는 원내대표가 주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의 재의결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주장한다. 반면, 비박계는 의원들의 위임과 추인을 받아서 처리한 법안이기에 때문에 사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진사퇴를 할 경우와 사퇴 거부할 경우에 따라 친박계와 비박계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 따라서 이를 두고 총 3단계로 나누어 어떤 선택이 최적인지 알아보고자 최종 결과값을 위한 게임을 설계해보았다.</p>				
과제내용 요약	<p style="text-align: center;">< 게임 설계 및 최종 결과 ></p> <p>1. 게임 ①</p> <p>1) 행위자: 유승민, 박근혜 (혼합전략에서는 친박, 비박이 행위자이다.)</p> <p>2) 행위: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p> <p>3) 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승민과 박근혜의 게임상황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행위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O, X의 여부이므로 Sequential Game 이다. - 유승민과 박근혜는 합리적인 행위자이다. 따라서 이 두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 유승민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차기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일부 잠재우고, 본인+비박계의 당내입지 강화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의O>발의X 의 이익 구조를 가진다. 한편, 박근혜 역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있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방해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O>거부권 행사X 의 행동이 더 유리하다.



< Sub-game Nash equilibrium >

2. 게임 ②

1) 행위자: 유승민

2) 행위: 자진사퇴 또는 버티기(버티기의 경우 의원총회 성사 확률은 100%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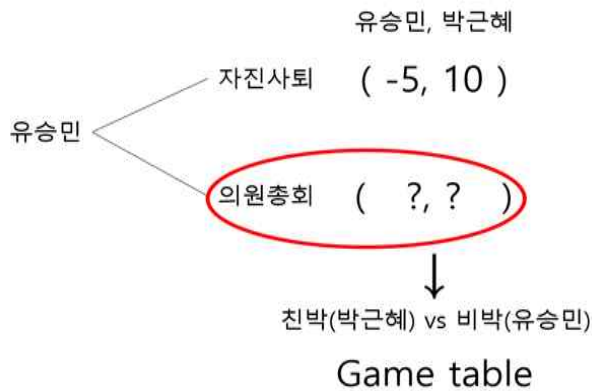
3) 가정

- 만약 유승민이 자진사퇴를 한다면 유승민은 -5점, 박근혜는 10점의 보수를 갖는다.

유승민이 자진사퇴를 할 경우, 원내대표의 자리를 잃고 당내에서의 입지는 축소된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이미 정부(박근혜)와는 관계가 틀어졌고,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자신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한다. 따라서 유승민의 profit은 -5점이다.

반면, 박근혜의 경우 유승민이 자진사퇴를 한다면, 박근혜는 국회법 개정안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도전을 한 유승민도 사라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의 영향력 확대 효과와 함께 당내에서 자신의 힘이 건재하다는 것을 비박 진영에게 각인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있을 총선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의 profit은 10점이다.

- 만약 유승민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유승민의 재신임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3. 게임 ③

1) 행위자: 친박, 비박

2) 행위

- 친박(박근혜 지지): 재신임 O, 재신임 X
- 비박(유승민 지지): 재신임 O, 재신임 X

3) 가정

- 의원총회는 친박과 비박의 합의에 의해서만 의결가능하다. 따라서 (재신임 X, 재신임O), (재신임O, 재신임X)의 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 = 현상유지이다.
- 현상유지의 경우 profit은 (0, 0) 으로 설정한다.
- 친박의 profit은 박근혜에게로 비박의 profit은 유승민에게 간다고 설정한다.

		친박(박근혜)	
		재신임	재신임X
비박 (유승민)	재신임	5,1	0,0
	재신임X	0,0	3,6

→ Nash가 2개

→ **Mixed strategy 적용**

		친박(박근혜)	
		재신임 (β)	재신임X ($1-\beta$)
비박 (유승민)	재신임 (α)	5,1	0,0
	재신임X ($1-\alpha$)	0,0	3,6

$$\begin{aligned} \alpha + 0 \times (1 - \alpha) &= 0 \times \alpha + 6 \times (1 - \alpha) \\ \alpha &= 6 - 6\alpha \\ 7\alpha &= 6 \\ \alpha &= 6/7, 1 - \alpha = 1/7 \end{aligned}$$

$$\begin{aligned} 5\beta + 0 \times (1 - \beta) &= 0 \times \beta + 3 \times (1 - \beta) \\ 5\beta &= 3 - 3\beta \\ 8\beta &= 3 \\ \beta &= 3/8, 1 - \beta = 5/8 \end{aligned}$$

4. 결론

1) 현실 상황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은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하고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친박계과 비박계의 입장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건을 두고 상충했다.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과 같이 하는 입장에 선 반면 비박계는 유승민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주어진 현실 상황을 전제로 하여 게임이론으로 유승민의 사퇴여부를 예측해보았다.

게임이론 상으로 도출한 보수를 통해 살펴보면 유승민이 자진사퇴를 하는 경우보다 사퇴를 거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의 혼합전략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의 결과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재신임 하는 조건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결과는 이와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재신임을 받지 못했고, 결국 13일만에 사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2) 게임의 시사점

게임이론과 현실의 결과 사이의 괴리에 대한 설명으로 행위자의 판단에 미친 영향을 크게 2가지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TK 지역 유권자 표심 의식이 그것이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당선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구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여부를 거머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밖에 나는 것은 공천에 이익을 두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전국적으로 50대 이상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하며 특히 TK 지역의 유권자들은 흔히 박근혜 고정지지기반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박근혜에 등지면서 대립하는 입장에 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다가올 총선의 선거에서의 유권자 표심을 고려한 것이 현실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듯 게임이론으로 도출한 결과에는 현실에서의 시간적 흐름과 복합적인 요인이 미치는 작용을 완전히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

4) 타운홀미팅 리빙랩

타운홀미팅 리빙랩은 동국대학교 링크사업단의 사업 중 하나인 캠퍼스 리빙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정치외교학전공에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타운홀미팅은 사회적 의제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활동가, 정치인, 시민이 모여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의사결정과정으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왔다.

미국에서는 최근 시민참여형 예산 책정, 지역재생사업 방안 결정, 사회적 상징건축물 건립방향 설정, 의료보험 개혁방안 도출 등에 타운홀미팅이 적용되어 의사결정의 대표적 방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림 3> 타운홀미팅 리빙랩 프로그램 팀별 사진



“출처: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

타운홀미팅 리빙랩은 학생들이 회의 진행 및 보조요원 등으로 참여함으로

써 공공영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21세기 한국적 타운홀미팅의 모델을 구축, 실험, 적용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및 사회적 현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타운홀미팅을 경험함으로써 관련 전문가가 될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팀별로 기존 법안을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악한 쟁점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의 입장을 듣고, 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법안의 쟁점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판단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표 5> 타운홀미팅 리빙랩 프로그램 결과물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20. 02. 07. 발 의 자 : 백지원 팀
<u>제안이유 및 주요내용</u>	
	자연공원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리원칙이 부재하여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 공원 관리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 주체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등 실효적인 관리 체계에 관한 수립에 있어 미비한 측면이 존재했으며, 자연공원 운영 및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 조정에서도 미흡하여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음.
	이에,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에 관한 기본원칙 및 실효적인 관리 체계의 수립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조의3 신설, 제36조)
	현행 공원 지정 및 관리 체계는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권한 설정으로 인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원 지정 및 관리 주체와 관련 기관 등의 기관별 책임 소재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정부와 관련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고 지자체별 자율성을 고려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제10조)

또한, 공원위원회에서의 체계적인 논의를 통한 자연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단체, 조계종 등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해당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 기관 등의 체계를 정비해 심의한 안건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고양하고자 함.(안 제9조)

더불어 자연공원의 미래지향적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의 증진을 위해 공원기본계획에 대한 조항 또한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원 관리의 기반이 될 공원계획을 정기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본 계획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7조)

자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서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각 용도지구를 규제하고 있는데, 다용도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조항으로 인하여 비상사태 시 피해구난시설 및 방재시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마저도 제한이 되고 있는데,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아목 신설)

또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공원의 특성상 불법시설물, 불법영업, 불법산행, 불법야영·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국내 생물자원의 밀반출 행위 등 일정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위치나 장소확인이 곤란하고 기상여건 등의 요인으로 일반경찰관이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공단 직원이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순찰·단속에도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대처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자연공원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 직원에게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의 원만한 보전과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문화 경관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 권한 마련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순찰·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

마지막으로, 지질공원은 현행법상 자연공원의 종류의 하나로 되어있으나, 다른 자연공원과 그 성격과 보호·관리 체계가 상이하어 현행법에서 그 인증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지질공원법」을 신설하여 이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4호의4, 제4장의2 삭제)

법률 제0000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4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연공원관리의 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자연공원의 관리에 있어 보전목적과 보전 외 목적이 상충될 경우 보전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의 생태계 서비스는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생태적 온전성을 고려하여 지정·관리되어야 하며, 국가 생태축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그 현황, 탐방객의 영향을 포함한 환경 영향 등에 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6. 자연공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7. 자연공원은 그 가치를 훼손 또는 증진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기본원칙의 구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이 기본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기본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을 신설한다.

제4조제5항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지정·관리를 위해, 상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할 수 있으며, 상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상응하는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을 “공원위원회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신설한다.

제9조제2항 공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신설한다.

제9조제3항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제4항을 신설한다.

제9조제4항 (공원위원회 위원의 자격) 공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사찰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의 대표자 중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자연공원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 대학에서 자연공원 관련 분야의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7. 그 밖에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9조제5항을 신설한다.

제9조제5항 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제2호 중 “수립에”를 “수립 및 변경에”로 하고, “(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된다)”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호 중 “결정·변경에”를 “수립·변경 및 평가에”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관리에”를 “보전·관리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신설한다.

제11조제2항 공원기본계획은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현황 및 전망
2.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경관, 자연·문화자원 현황 및 전망
3.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관리 현황 및 전망
4.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기본방향·목표 및 전략
5. 산악형, 해안·해상형, 사적형 등 공원유형별 관리전략에 관한 사항
6.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경관 및 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가 생태축 구축·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8. 자연공원의 탐방·교육 등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재원조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제3항을 신설한다.

제11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수립한다.

1. 공청회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4.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제11조제4항을 신설한다.

제11조제4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제5항을 신설한다.

제11조제5항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조사 결과 및 자연공원 관련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제6항을 신설한다.

제11조제6항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따르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의 "환경부장관이"를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를 "공원계획은 다음 각 내용을 포함하여야"로 하고, 각 호를 신설한다.

1. 공원용도지구
2. 공원시설계획
3. 공원현황
4.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등 자연보전·관리 계획
5. 지역사회협력 계획
6. 건축물의 철거·이전 및 행위 제한
7.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

제18조제2항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한 도로, 철도 등 신설 사업과 관련한 피해구난시설이나 방재시설의 설치

제34조 중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공단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원관리청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을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경관 및 자연·문화자원 현황, 이용 현황, 공원관리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로 한다.

제4장의2(제36조의2 ~ 제36조의8)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의3.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4. <u>"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u>	4의4. (삭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 10. (생 략)

<신 설>

5. ~ 10.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자연공원관리의 기본원칙) 자연
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자연공원의 관
리에 있어 보전목적과 보전 외 목적
이 상충될 경우 보전목적이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의 생태계 서비스는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야 한다.
3. 자연공원은 생태적 온전성을 고려하
여 지정·관리되어야 하며, 국가 생태
축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그 현황, 탐방객의 영향
을 포함한 환경 영향 등에 관한 과
학적·객관적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
야 한다.
5.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호혜
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6. 자연공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
어져야 한다.
7. 자연공원은 그 가치를 훼손 또는 증
진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가 그에 상

<신 설>

<신 설>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의3(기본원칙의 구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이 기본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기본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지정·관리를 위해, 상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할 수 있으며, 상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는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공원위원회를-----

② 공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한다.

-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③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제9조제4항 (공원위원회 위원의 자격) 공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가 지명하는 자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사찰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의 대표자 중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자연공원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 대학에서 자연공원 관련 분야의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자
7. 그 밖에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⑤ 제9조제5항 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수립 및 변경에-----

3. -----수립·변경 및 평가에-----

4. (현행과 같음)
5. -----보전·관리에-----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시행하여야-----

- ② 공원기본계획은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현황 및 전망
2.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경관, 자연·문화자원 현황 및 전망
3.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관리현황 및 전망
4.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기본방향·목표 및 전략
5. 산악형, 해안·해상형, 사적형 등 공원 유형별 관리전략에 관한 사항
6.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경관 및 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가 생태축 구축·보전 및 기후변화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대응에 관한 사항

8. 자연공원의 탐방·교육 등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재원조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수립한다.

1. 공청회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4.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조사 결과 및 자연공원 관련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따르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
-----10년마다 환경부장관
이-----

②·③ (생략)

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제18조(용도지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 사.

<신설>

2. ~ 6. (생략)

③ ~ ⑤ (생략)

제34조(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

②·③ (현행과 같음)

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은 다음 각 내용을 포함하여야-----

- 1. 공원용도지구
- 2. 공원시설계획
- 3. 공원현황
- 4.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등 자연보전·관리 계획
- 5. 지역사회협력 계획
- 6. 건축물의 철거·이전 및 행위 제한
- 7.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한 도로, 철도 등 신설 사업과 관련한 피해구난시설이나 방재시설의 설치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

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공단의 임·직원-----

-----.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경관 및 자연·문화자원 현황, 이용 현황, 공원관리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삭제)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삭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삭제)

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 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29.>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삭제)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삭제)

<p>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제36조의7(비용부담) (삭 제)</p>
<p>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6조의8(금지행위) (삭 제)</p>

“출처: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

5) 폴리티쿠스랩 RCC

RCC란 대학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자립화가 가능한 대학의 비교 우위 지역특화 분야를 선택하여 지역 내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연구, 교육, 산학협력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센터를 말한다. 2019년도부터 진행 중인 폴리티쿠스랩 RCC는 동국대학교가 위치한 서울시 중구와 경기도 고양시 등 지역사회의 발전계획과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목표를 부합하게 설정해 진행된다.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성 구축,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계획, 진행한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화 교육 및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산업·지자체·대학·지역주민이 함께 도심형 지역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기반 조성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학생들은 국내외 도시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례들을 살펴보고, 정책 동향을 연구하며, 관련 전문가 및 주민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을 전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등 학생들은 서울시 중구의 조례 중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회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과 운영 방식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학전공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의회 운영에 시민의 참여를 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6> 폴리티쿠스랩 RCC 프로그램 결과물

중구 조례 제·개정	
하성필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용산구 2012.02.29. 일부개정	중구 관련조례 존재하나 모호
<p>→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 1430호)가 존재하나, 임산부 출산양육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 및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3, 2018.9.21.></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기존 조례와 연계하여 출산양육지원 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신설한다면 모유수유시설, 출산을 앞둔 부부에 대한 교육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p> <p>따라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조항 신설 및 제개정이 필요함.</p>
<p>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regionId=11170&isfez= (조례 제 958호)</p>	<p>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regionId=11140 (조례 제 1430호)</p>

송원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 2019.11.1. 일부개정	중구 2015.7.1. 일부개정
<p>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p> <p>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조 신설 2015. 07. 10.></p>	<p>강남구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중 제5조를 벤치마킹 해야 하는 이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민들의 흡연문제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해당 조례에 가장 큰 목적임 2.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의 업무성과가 목적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짐 3. 그렇기에 금연지도원이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해 내지 못하면 조례의 목적이 퇴색되며 시간 소비적인 문제가 존재함. 4. 고로 강남구와 같이 임기를 설정하고 해당 임기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금연지도원의 성과에 따라 결정해야 함. 5. 금연지도원의 성과는 새로이 구성하는 것보다, 벤치마킹에 의미를 두어 강남구의 성과평가방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416555&gubun=ELIS>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131693&gubun=ELIS>

서준엽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p>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137호 2012. 11. 6., 제정</p>	<p>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1.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508호, 2017. 5. 18., 제정]</p>
<p>[시행 2013. 1. 1.]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137호, 2012. 11. 6., 제정]</p>	<p>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 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 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위 조항은 서울특별시조례이다.)</p> <p>->서울특별시중구조례 1137호는 현재 서 울특별시조례 제 6508호를 바탕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조례에서 '과도한 음 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가 회사 생활의 부가적인 노 동시간으로 간주되는 사회 분위기를 쇠신 하여 건강한 회사 문화 조성에 기여'와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과 태료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된 바가 있다. ->서울특별시중구조례는 상위조례인 서울 특별시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p>

	->따라서 서울특별시중구조례의 12조를 13조로 미루고, 12조로 서울특별시조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 10조인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768691&gubun=ELIS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87222&gubun=KLAW#rvsTop

이현주

<p>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시행 2013. 7. 19.]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190호, 2013. 7. 19., 제정]</p>	
<p>중구 2013.07. 19 제정</p>	<p>노인복지법 - [법률 제15881호, 2018.12.11. , 타법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법률 제12449호, 2014.03.18. , 일부개정]</p>
<p>「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190호 2013.07.19. 제정. 조항은 아래 링크 참조</p>	<p>노인복지법의 경우,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2013년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 6조는 2017년 신설됨. 그럼에도 중구조례에 수정되지 아니함. -> 따라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 7조(평생교육프로그램활용)의 조항에 인권교육 조항 추가. -> 이에 따라 일자리를 지원 받았을 시, 교육을 통한 효과를 볼 수 있음. -> 제8조(예산지원)의 조항에서 예산지원을 노인의 인권교육에 지원하는 것으로 함.</p> <p>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경우,</p>

	<p>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2013년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2조는 2014년 개정됨. 그럼에도 중구 조례에 수정되지 아니함.</p> <p>-> 따라서 제8조(예산지원)의 조항에 의거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지원한 노인들 및 일자리를 지원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검진 예산을 지원할 것.</p>
<p>중구조례 제1190호 http://www.law.go.kr/LSW/ordinSc.do?tabMenuId=tab13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서울특별시%20중구%20노인일자리%20창출%20지원%20조례#liBgcolor0</p>	<p>노인복지법 :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Nm=노인복지법&joLnkStr=&chrClsCd=&mode=20#</p> <p>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joLnkStr=&chrClsCd=&mode=20#</p>

“출처: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

2.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사례의 기여와 한계

앞서 살펴본 5가지의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사례인 게이미피케이션(게임이론), 정치관계법의 이해 강좌, 캡스톤디자인, 타운홀미팅 리빙랩, 폴리터쿠스

랩 RCC 프로그램은 강의형 교육, 일회성 참여형 교육과는 다르게 학생주도적 활동을 위주로 하는 다회성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게임이론과 정치관계법의 이해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의 정규강좌에 해당한다. 해당 강좌들은 학생들이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정당 등 정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 지식을 공유한다. 현실 정치 및 정치 이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추후 응용 과제 및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학생들이 게임이론 분석이나 선거법 제, 개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다양한 게임이론 분석 방법과 현실 정치 문제 해결에 대한 게임이론의 기여도, 선거 및 정치 관련 법 제도 등의 이론적 지식을 우선적으로 학습한다.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선거 및 정치 관계법의 전반적인 현황과 관련성을 파악하고, 게임이론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강좌 형식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에는 두 가지의 한계가 있다. 첫째, 이론 전달 위주의 강의 형식과 학점 및 강의 평가 시스템의 제약이다. 대학의 정규강좌 특성상 학점과 강의 평가 시스템에 따라 학생들의 학점이 부여되고, 강좌의 유지와 폐지가 결정된다. 또한 상대 평가 규정에 따라 한정적인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주관적 평가로 보일 수 있는 학생 주도적 참여 과제보다 객관적 평가로 보여지는 이론 관련 시험을 기준으로 내세울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강의 진행 시간보다 교수자의 이론 전달 형식의 강의 진행 시간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수자나 학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교의 규정에 의해 초래된다.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점과 평가가 주를 이루는 민주시민교육은 이론 위주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쉽다. 이는 형식의 민주시민교육은 교수자의 이념과 신념에 따라 강의 내용이 좌지우지 된다는 한계와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둘째,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교수자의 능력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정규강좌를 진행하는 교수자는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대학 또는 학과의 교수가 진행하는

방식과 학기별 채용 통해 뽑힌 강사가 진행하는 방법, 선거연수원 등의 전문기관의 초빙 교수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선거연수원 등의 전문기관의 초빙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기반으로 강좌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에 비해 대학이나 학과의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정치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했다는 전제하에 이론적 지식의 전달, 공유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참여형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기존의 이론 강의형 민주시민교육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대학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이론 강의형, 단기 체험형 민주시민교육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는 대학 내 자체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으로 보완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취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최근의 대학이 각각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를 초빙하고 관련된 강좌를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정규강좌는 아니지만 동국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는 캡스톤디자인과 타운홀미팅 리빙랩, 폴리티쿠스랩 RCC가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가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규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점이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캡스톤디자인의 경우 학생들이 해결이 필요한 현실 정치의 문제나 논의 주제 결정부터 문제 해결 방식의 선택, 해결방안 도출까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타운홀미팅 리빙랩과 폴리티쿠스랩 RCC는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 해결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비교과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의 한계가 있다. 첫째, 정치 관련 제반 지식의 기초 확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학이나 학과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되는 비용에 제한이 있다. 게다가 프로그램의 특성상 일정이 유동적인 것도 정치 관련 기본 지식이나 이론을 전달할 교수자를 초빙하는데 문제가 된다.

현실 정치나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문제

해결 방식을 적용, 응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음에도 전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의 반복되면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학점이나 평가 등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생의 참여가 자율적이지만 반대로 지속적인 학생 참여도를 유지하는 수단이 없다.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성패는 학생들의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결정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정규강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적 활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규강좌의 한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학 내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대학 내에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연수원 등의 전문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교수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사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연수원과 대학의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IV.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모색

1. 게이미피케이션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을 위한 모델은 여러 측면에서 개발할 수 있다. 우선 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다. 동국대학교는 선거연수원이 매년 주최하는 정치페스티벌에 ‘보드게임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참여해왔다. 이는 그 동안 이론 중심형이자 교수자의 일방적 지식전달을 위주로 한 민주시민교육에서 탈피하는 중요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시민과 학생은 그 동안 이론과 지식을 교수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객체에서 쌍방향 소통의 주체적 참여자로서 전환된다는 걸 의미한다. 처음 대학에서 시작한 보드게임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은 고등학교에서도 정치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게임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래에서는 ‘게임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이 정치페스티벌에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넘어 대학은 물론 중고교까지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그림 4>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모델이다. 게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2019년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교수법 연구를 통해 제시한 바가 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의 몰입효과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좋은 교육방법론이다.

이곳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바탕으로 선거연수원이 대학 및 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학생들은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에 참여하여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게 된다. 게임을 만들면서 스스로가 몰랐던 정치과정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고, 어떻게 하면 게임을 통해 게임 참여자가 관련 내용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인지도 고민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메타인지 능력이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학생들은 게임 참여자들이 해야 하는 게임을 만들면서 정치에 대한 기본 지식 중 스스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인지하게 되고, 나아가서 모르는 것에 대해 알려고 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게 된다. 이는 게임 참여자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말도 여기에 해당한다.

2단계는 만들어진 게임을 통해 직접 게임 참여자의 앞에서 시연을 하고 설

명하면서 이루어진다. 스스로가 만든 게임을 중·고등학생에게 설명을 할 때, 대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표현하는 표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표현하였을 때, 상대가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표현이 온전히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져야할 필수적 항목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참여한 중·고등학생은 게임을 통해 정치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교육수요자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흥미를 돋우면서 정치적 절차와 정치과정에 주요 주제인 선거와 정당, 그리고 의회와 정부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알게 된다. 이 때 중·고등학생들은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바를 설문을 통해 제시하게 되며, 제시된 설문은 다시 대학생들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3단계에서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자신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게임의 문제점이나 더 필요한 부분을 게임 참여자였던 중·고등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이를 통해 게임 참여자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수요자로서 교육을 받기만 했던 대상에서 스스로 교수자가 되어 교수자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인 4단계는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어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에 있는 지역 대학과 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진행된다면 효과와 파급력의 측면에서 배가될 것이다. 그리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음해의 유권자 페스티벌에 출전하여 게임을 선보이도록 한다. 유권자 페스티벌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끼리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선순환의 모델을 구축하면,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은 완성된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연수원과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 선거연수원에서는 만들어지는 정치 관련 게임들에 대한 근거들, 즉 정치적 지식들을 제공해줘야 한다. 그것이 선거, 정

당, 혹은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일 수도 있지만, 정치관계법에 대한 위 반사례 같은 현실적인 지식이면 더욱 좋다. 학생들은 정치지식을 이념적 굴 절 없이 대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은 게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될 것 이다.

대학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치에 대한 의무교과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이 시민이 되어 선거만을 하 고 주권자라고 인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은 이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다. 또한 최근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 에서 대학들에게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대 학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한다면, 대학은 지 역대학으로써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한다는 기여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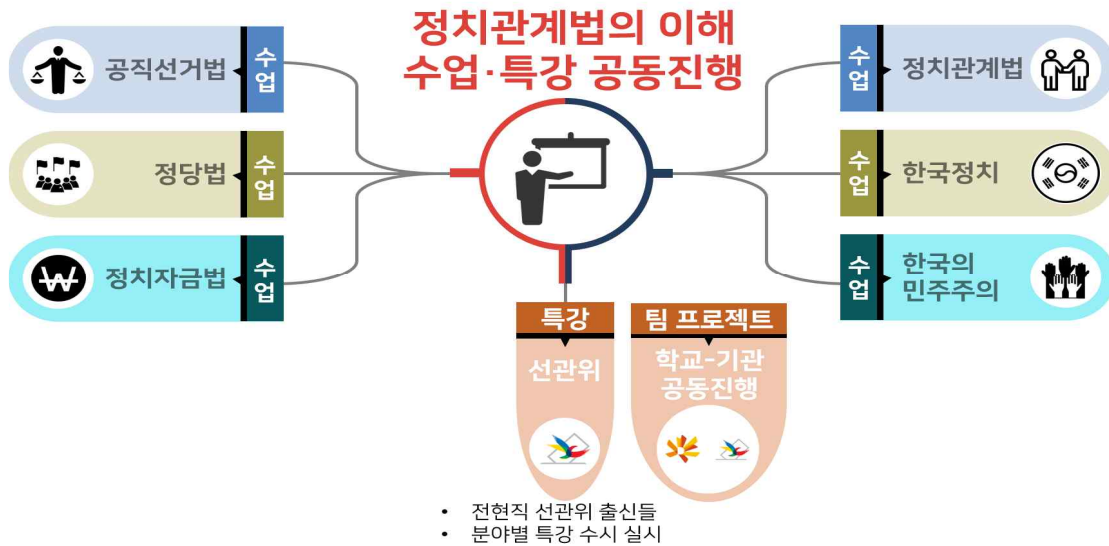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미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활용하여 게임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할 수도 있다. 선관위 출신 초빙교수의 민주시민교 육 관련과목이 일부 개설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이 과목에 보드게임 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2. 정치관계법의 이해

선거연수원(선관위)과 대학의 공동수업 진행모델이다. 현재 동국대학교 정 치외교학과와 서울시 선관위는 함께 ‘정치관계법의 이해’ 과목을 운영한다. ‘공직선거법의 이해’에서 출발한 이 과목은 2020년 2학기부터 ‘정치관계법의 이해’로 개편되어 운영되었다.

당초 선거연수원 파견강사에 의해 시작한 ‘공직선거법의 이해’는 명칭변경 과 함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와 서울 선관위가 공동운영하는 체제로 개편되 었다. 아래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과 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의 한 모델로서 ‘정치관계법의 이해’를 통한 대학과 선거연수원의 공동 운영 과목의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 정치관계법의 이해 수업구성과 목표



‘정치관계법의 이해’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다룬다. 이들 정치관계법은 한국정치, 특히 한국의 정치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정치관계법의 이해’를 통해 수강생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기제와 정치발전의 제도적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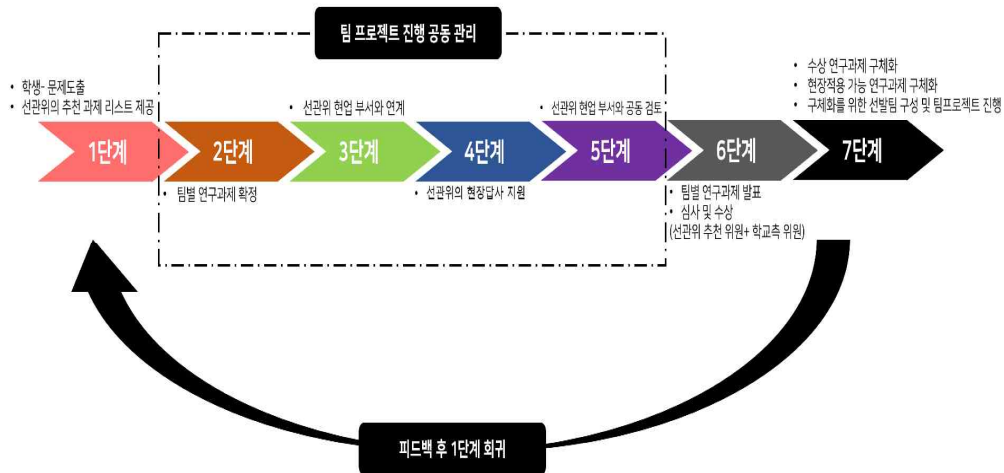
‘정치관계법의 이해’는 정치과정, 정치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같은 이론적 논의와 선거와 정당 그리고 정치자금의 현실적 이해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는 정치외교학 전공의 이론 중심 교육의 선거관리와 정당육성 그리고 정치자금 규제와 관리의 선관위가 함께 운용하는 게 가장 적절한 과목이라는 의미이다.

대학과 선관위의 ‘정치관계법의 이해’ 수업과 특강의 공동 진행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첫째, 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의 정치관계법 관련 전문가와의 수업 공동 운영이다. 정치관계법과 정치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 부분은 대학에서 맡고, 정치관계법의 구체적 내용과 현실적 운용은 선관위 추천강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둘째, 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의 이해 당사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수업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선관위가 진행한다. ‘정치관계법의 이해’ 담당교수와 선관위 추천 관련법규 강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되

필요와 주제에 따라 관련분야의 강사와 특강을 통해 정치현장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림 6> 팀 프로젝트 공동관리 진행 흐름



셋째, ‘정치관계법의 이해’과목의 핵심은 팀 프로젝트의 학교와 선관위의 공동 관리로 이는 다음과 같은 7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팀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하는 일이다. 이 때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의 주제선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학생들의 자발적 주제선정이다. 학생들의 관심과 결정에 따라 향후 연구하게 될 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관위 관련부서, 즉 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의 현업부서에서 추천한 과제 리스트에서 연구과제의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관위의 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의 현업부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색의 하나로 ‘정치관계법이 이해’과목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된다.

2단계는 팀별 연구과제의 확정이다. 학생 스스로 연구주제의 확정이든 선관위 관련부서의 추천 리스트 중 연구주제의 확정이든 팀별로 선거법과 정당법 또는 정치자금법중의 중요한 연구 과제를 확정하고 팀별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3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팀 프로젝트는 선관위와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 된다. 선관위 현업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현장답사 또는 면담 등은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관계법의 현장에 대한 접

근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특히 팀별 과제에 대한 선관위 현업부서와의 공동검토는 과제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현장 적용 가능한 대안, 즉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단계는 팀별 연구과제의 발표와 심사 그리고 시상이다. 이 때 심사와 시상을 위해 대학과 선관위 추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팀 프로젝트 진행의 공동 관리는 대학과 대학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선관위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7단계는 수상 연구과제의 구체화다. 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관계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가 ‘정치관계법이 이해’ 과목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팀별 과제 특히 수상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한 학생과 선관위 현업부서의 합동작업도 가능할 수 있다.

3. 현대 한국 정치실습

<그림 7> 현대한국정치실습/학점인정과정의 구성



서울시 선관위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학점인정과정’을 운영해 왔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종로시절 선거연수원과 함께 시작한 것으로 동국대에서는 ‘현대한국정치실습’이라는 과목으로 개설된다. 이후 ‘학점인정과정’은 서울시 선관위로 이관되어 현재 봄/가을 학기 각각 4개 대학, 8개 대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동국대의 경우 ‘현대한국정치실습’은 이론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 계기이다. 선관위 주관의 기관방문과 방문특강 등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현장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는 이 과목의 수강기준을 두고 있는데, 가능한 4학년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선관위의 경우 ‘학점인정과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고 해당기관의 주요인사와의 만남 또는 특강수강의 기회를 선관위가 제공한다. 이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한 모델로서 ‘학점인정과정’ 또는 ‘현대한국정치실습’은 이론과 현장의 연계를 넘어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으로 진화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수강생들이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협업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제선정과 진행, 특히 개인과제와 팀별 과제는 앞서 ‘정치관계법의 이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대한국정치실습은 나아가 선관위를 통해 학생 개인과 팀별 과제의 선관위 외 협업기관 선정과 연결을 지원한다.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즉 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이외의 주제를 선정한 개인과 팀 작업 간접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장방문 중심의 ‘현대한국정치실습’과 ‘학점인정과정’은 현장과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수업으로 PPAT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그림 8> 현대한국정치실습의 목적과 운영방식

현대 한국 정치 실습

- 지난 10여 년 이상 **선관위**와 함께 **공동**운영 '해운 수업'
- 타 수업과는 다르게, **Active Learning** 방식으로 '이론-현장연계'를 넘어 수강생들의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업,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학습하도록 함
이를 위해 **P.P.A.T 방식**의 수업을 진행
- **현장방문** 중심의 수업으로 **현장**과 **현실문제**에 적용하는 수업

P.P.A.T 수업



- **P**roject Based Learning
: 참여 학생들의 **주도**로 과제 선정, 탐색, 임무 수행 진행
이를 통해 지식, 연구, 구성,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역량 강화** 목표
- **P**roblem Based Learning : 현장문제와 필요 **파악**
: 참여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개별학습과 팀학습으로 **공동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
- **A**ction Learning : **현장관찰**과 **참여**를 통한 해결책 제시
: 학교 밖, 실제 현장의 과제를 해결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질문과 성찰을 통해, 실제 해결책의 **적용** 여부에 초점
- **T**eam Based Learning : 개별학습 또는 팀학습을 **동시 진행**
: 학생 개인이 팀에 속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팀원 모두가 **최대**의 학습 성과를 이루도록 함
이외에도 학습준비도 평가, 응용학습, 최종 결과물 평가 등의 과정으로 진행

이 수업은 청와대, 외교부, 국내소재 국제기구, 국회, 정당, 선관위(중앙과 지역), 사법부와 헌재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 중심의 수업'으로 '현장과 현실문제에 적용하는 수업'이다. '현대한국정치실습'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선관위와 함께 공동운영하는 수업'으로 향후 '실제적인 현장문제와 필요를 파악하여 (Project/Problem base Learning), 현장관찰과 참여를 통한 해결책(Action Learning)제시를 위해 개별학습과 팀학습(Team based Learning)을 동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의 '현대한국정치실습'은 향후 '이론-현장연계'를 넘어 수강생들의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업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을 제고하는 수업으로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과제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학습하는 수업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수업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김수영, 나운주 2020).

첫째, 팀 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은 개별학습과 팀학습을 접목시켜 개인이 팀의 학습에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학습 팀이 최대한의 학습성과를 이루도록 하는 교수방법으로 팀 또는 개인 학습준비도 평가, 응용학습 그리고 평가 단계로 운영되며 교과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심화 활동 진행된다.

둘째,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동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수방법으로 교수가 제시한 문제로부터 학습 시작, 학생은 학습 과제 및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해결안 도출로 진행된다.

셋째,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탐색하고 분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산출해내도록 하는 교수방법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과제 선정, 탐색, 수행의 전 과정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연구, 구성, 문제해결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넷째,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강의실 밖 실제 현장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해결과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질문과 성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수방법으로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실제 과제를 다루고, 과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접근, 실제 과제해결 및 해결책의 적용 여부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 비대면 시대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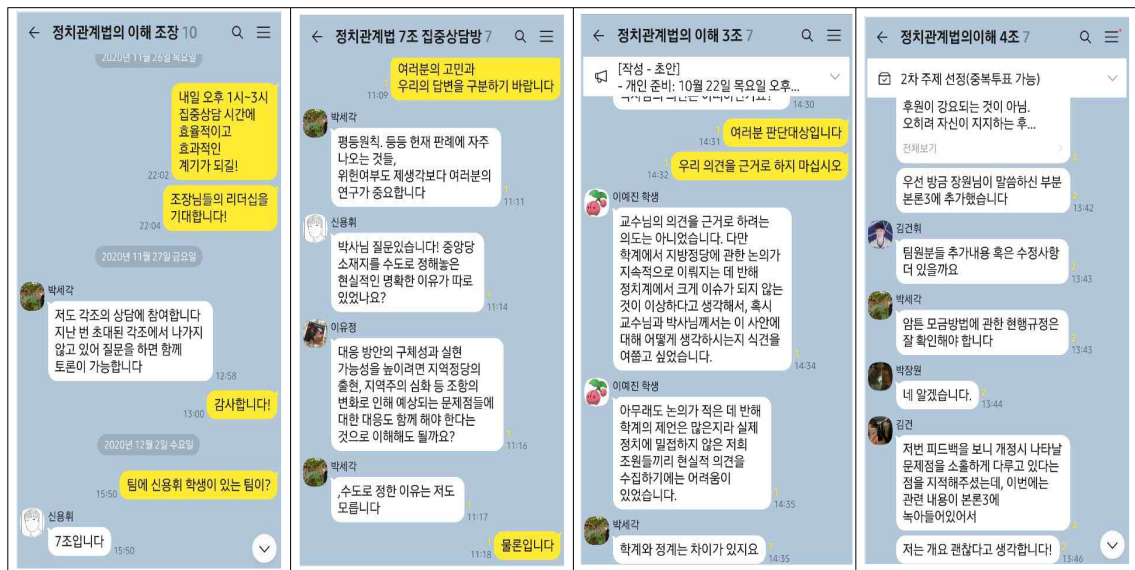
비대면 시대의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은 시대적 요구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는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용모순의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비대면 시대의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은 현장, 현장의 필요, 과제중심, 문제파악과 해결중심 그리고 현장관찰과 참여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때 핵심은 시민과 학생, 즉 민주시민교육 대상자의 참여다. 이는 그들의

필요와 요구의 해결책 찾기에 그들이 직접 나선다는 것을 말한다. 참여는 개인 또는 집단의 형태로 진행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신의 문제이자 과제의 해결책을 개인이든 집단의 방식으로 해결책 또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참여의 계기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비대면 시대의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형용모순의 시대적 요구는 현대한국정치실습 또는 학점인정과정과 같이 PPAT 방식이 원용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래에서와 같이 참여자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림 9> 비대면 시대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운영방식



V.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강의형 민주시민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은 대학과 선거연수원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한다.

선거연수원과 대학의 협업모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선관위와 함께 다양한 공동 작업을 진행해 온 동국대학교의 경험과 최근 동국대와 선거연수원 또

는 선관위가 진행해온 여러 프로그램 그리고 동국대 교과 또는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학과 선거연수원의 협업모델은 일종의 원형(Prototype)으로서 2021년 두 학기에 걸쳐 시범운영 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어려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계속 수정/보완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은 코로나가 가져온 시대적 요구와도 일맥상통한다. 2020년은 코로나의 한 해였다. 그 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일상은 멈추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름으로 대면교육은 중단되었다. 대학교육도 마찬가지였고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또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다. 그것은 바로 ‘비대면 시대의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으로 본 연구는 이에 대해 ‘대학과 선거연수원의 협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첫째, 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는 그 동안 이론 중심형 이자 교수자의 일방적 지식전달을 위주로 한 민주시민교육에서 탈피하는 중요한 대안이다. 시민과 학생은 그 동안 이론과 지식을 교수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객체에서 쌍방향 소통의 주체적 참여자로서 전환된다.

둘째, 대학과 선관위의 ‘정치관계법의 이해’ 수업과 특강의 공동 진행이다. 이는 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의 정치관계법 관련 전문가와의 수업 공동 운영이다. 정치관계법과 정치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 부분은 대학에서 맡고, 정치관계법의 구체적 내용과 현실적 운용은 선관위 추천강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셋째,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의 한 모델로서 ‘학점인정과정’ 또는 ‘현대한국정치실습’은 이론과 현장의 연계를 넘어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으로 진화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수강생들이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협업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비대면 시대의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은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용모순의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비대면 시대의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은 현장, 현장의 필요, 과제중심, 문제과학과 해결중심 그리고 현장관찰과 참여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때 핵심은 시민과 학생, 즉 민주시민교육 대상자의 참여다. 그들의 필요와 요구의 해결책 찾기에 그들이 직접 나선다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신의 문제이자 과제의 해결책을 개인이든 집단의 방식으로 해결책

또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참여의 계기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이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대안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배경과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제시되었다.

민주주의 근간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이다. 다양성을 담보하는 주체는 개인과 집단인데, 개인을 중시하는 것과 집단을 중시하는 것,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위험하다. 이 둘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만이 집단 속에 개인이 묻혀버리는 전체주의, 개인만을 중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개인주의의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치 이념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시도라는 오해를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오해 속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기관이 없다. 민주시민교육 법제화와 더불어 주무기관의 존재는 중요하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강사들 대다수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야할지 모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이다.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은 실제 현실문제로부터 배우자는 것이다.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틀인 이론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과 무관하지 못한다면 다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민주시민교육을 당파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는 법제화와 주무기관 선정을 가로막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처럼 필요한 것은 교육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하게 된다.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낯설게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이 개념은 듀이가 제시하였다. 존 듀이는 이론 중심의 형이상학적 논의가 현실을 왜곡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용주의 교육철학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선거, 정당 등 정치과정에 대한 제반 지식이다.

두 번째는 지역과 공동체의 현실 문제를 접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고 이를 피력하는 자기표현과 참여의식이다. 세 번째는 다윈주의 함양을 위한 상호 소통과 공감이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정말 지식으로써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론화된 교육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마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바람직한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실 문제를 마주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현실문제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타인의 입장과 생각을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형태는 한정적이며, 주로 일시적 강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강의자와 학생에게 익숙하고, 한 번에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의형 정규과목의 경우 정치에 관련된 지식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참여형 교육은 정치 관련 기관을 방문, 견학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 방식은 대학의 자체 진행보다 선거연수원 등 정치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동국대학교의 교과목과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그리고 동국대와 선관위가 함께 하는 과목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만들어진 게임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과 학생들이 직접 게임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게임을 통한 교육은 학생들이 게임행위자와 게임 창작자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느낄 수 있다.

정치관계법의 이해 강좌에서는 현 정치관계법 조항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 입법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학습한 이론을 현실 정치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다.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공강좌를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회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된다. 이 프로그램은 해결 과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교수 및 전문가가 멘토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

타운홀 미팅 리빙랩은 학생들이 회의 진행 및 보조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정치 및 사회적 현안의 논의과정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시민사회 운영 방식을 체험해볼 수 있다.

폴리티쿠스랩 RCC는 지역 내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동국대학교가 위치한 서울시 중구, 경기도 고양시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및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형 지역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기반 조성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규 강좌형 민주시민교육인 게임이론과 정치관계법의 이해의 장점은 첫째, 학생들이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과정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공유한다. 둘째, 학생들은 기를 기반으로 응용 과제 및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계로는 첫째, 이론 전달 위주의 강의 형식과 학점 및 강의 평가 시스템의 제약과 둘째, 진행하는 교수자의 능력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인 캡스톤디자인과 타운홀미팅 리빙랩, 폴리티쿠스랩 RCC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가 기반이 된다는 점과 둘째, 정규강좌가 아니어서 학생들이 학점이나 평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과 프로그램은 두 가지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정치 관련 제반 지식의 기초 확립이 어렵다. 둘째, 학점이나 평가 등의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학생의 참여가 자율적이지만 반대로 지속적인 학생 참여도를 유지하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대학 내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에 지원과 투자가 한정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연수원 등의 전문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교수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Aristoteles. 저 · 천병희 역. 2013. 「정치학」 . 고양: 숲.
- Aristoteles. 저 · 조대호 역. 2017. 「형이상학」 . 서울: 길.
- Clausewitz, Carl 저 · 허문순 역. 2009. 「전쟁론」 . 서울: 동서문화사.
- Dewey, John. 저 · 이홍주 역. 2007. 「민주주의와 교육」 . 파주: 교육과학사.
- Duverger, Maurice 저 · 배영동 역. 2006. 「정치란 무엇인가」 . 서울: 나남.
- Eco, Umberto. 저 · 김운찬 역. 2004. 「민주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치는가」 . 서울: 열린책들.

- Locke, John 저 · 강정인 · 문지영 역. 1996. 「통치론」 . 서울: 까치글방.
- Locke, John. 저 · 정병훈 · 이재영 · 양선숙 역. 2014. 「인간지성론 I」 . 파주: 한길사.
- Locke, John. 저 · 박혜원 역. 2011. 「교육론」 . 서울: 비봉출판사.
- Michels, Robert. 저 · 김학이 역. 2002. 「정당사회학」 . 서울: 한길사.
- Montesquieu, Charles 저 · 하재홍 역. 2007. 「법의정신」 . 서울: 동서문화사.
- Mouffe, Chantal. 저 · 이행 역. 2006. 「민주주의의 역설」 . 고양: 인간사랑.
- Nussbaum, Martha. C. 저 · 우석영 역. 2016.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 파주: 궁리.
- Plato 저 · 박종현 역. 2005. 「국가·정체」 . 파주: 서광사.
- Plato 저 · 박종현 역. 2009. 「법률」 . 파주: 서광사.
- Rancière, Jacques 저 · 201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 고양:인간사랑.
- Raths, L. Harmin, M & Simon, S. B. 1994. 정선심·조성민 역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서울: 철학과현실사.
- Rousseau, Jean-Jacques 저 · 민희식 역. 2006. 「에밀」 . 고양: 육문사.
- Rousseau, Jean-Jacques 저 · 주경복 · 고봉만 역. 2003. 「인간불평등기원론」 . 서울:책세상.
- Rousseau, Jean-Jacques 저 · 김중현 역. 2010. 「사회계약론」 . 서울:펍권클래식코리아.
- Sandel, Michael. 저 · 이양수 역. 2012a. 「정의의 한계」 . 고양: 멜론.
- Sandel, Michael. 저 · 안규남 역. 2012b. 「민주주의의 불만」 . 파주: 동녘.
- Sartori, Giovanni. 저 · 어수영 역. 1995. 「현대정당론」 . 서울: 동녘.
- Saward, Michael. 저 · 강정인 · 이석희 역. 2018.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서울:까치글방.
- Weber, Max. 저 · 최장집 편 · 박상훈 역. 2013. 「소명으로서의 정치」 . 서울: 후마니타스.
- 김민수 외. 2019.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교수법 연구”. 선거연수원.
- 김수영 · 나윤주. 2020. 「THE 나은 수업 설계를 위한 액티브러닝 가이드북」 . 동국대 교수학습개발센터.

- 심성보. 2014.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 서울: 살림터.
- 심성보. 2017.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67.
- 정영철. 2014. “서울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흥사단교육운동본부.